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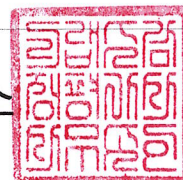
건명: 김상용 소유물건(2024타경102987)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감정평가서번호: R1-2405-1-04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랩스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재우

朴 宰 右



감정평가액	오천삼백오십만원정 (₩53,500,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상용 (2024타경 102987)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6.05	2024.06.04 ~ 2024.06.05 2024.06.0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 1세대x- 2	아파트	1 1세대x- 2	-	53,5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53,5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소재 “경동메르빌2차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원효아파트(통칭:원호주택)” 2층 208호(아파트)에 대한 법원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 현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1-432, 1-493 “원효아파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32-7

이용상황	아파트	사용승인일자	1981.09.30.
건물의 구조 및 층수/ 시공 및 관리상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3층/노후	배후지의 상태 및 규모	1개동 (20세대)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 타	-

일련 번호	구 분	전유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계약면적(m ²)	대지지분(m ²)	전용율(%)
1	2층 208호	60.56×1/2	5.39×1/2	65.95×1/2	43.302×1/2	91.83

※ 공급면적=전유면적+주거공용면적 = 60.56 + 5.39 = 65.95m² (19평형)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년 06월 05일입니다.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06월 04~05일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 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습니다.

3. 특이 및 유의 사항

- (1) 대상물건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호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원호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2) 대상물건은 2인 공동소유 물건으로서, 지분별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매각지분 비율에 의거 금액을 사정하였습니다.
- (3) 대상물건의 현장조사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진행시 대상물건의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구분소유권의 평가방법은

- ①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유사거래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② 대상 구분소유권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 ③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1동 전체의 가격을 구한 후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 대상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대상물건은 주거용 구분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원가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익 및 환원율의 파악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한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 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가. 평가 개요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 분	거래사례 1.	거래사례 2.
소재지·건물명칭	중앙동2가 1-432, 1-493 원호주택	중앙동2가 1-432, 1-493 원호주택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호수	2층 000호	3층 000호
사용승인일	1981.09.30.	1981.09.30.
전유면적(m ²)	37.88	60.03
거래가액	63,000,000	107,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원/m ²)	@1,663,147	@1,782,442
거래시점	2022.09.03.	2023.12.27.
비 고	실거래	실거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유사 물건의 평가사례

최근 3년 이내 평가사례 없습니다.

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평가선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2>를 선정하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 분	거래사례 2.
소재지 · 건물명칭	중앙동2가 1-432, 1-493 원호주택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 · 호수	3층 000호
사용승인일	1981.09.30.
전유면적(m ²)	60.03
거래가액	107,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원/m ²)	@1,782,442
거래시점	2023.12.2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1.000)

(3) 시점수정

(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나) 대상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시점수정하였습니다.

(다) 시점수정치

대상물건의 기준시점(2024.06.05.) 적용 지수	104.7
거래사례의 거래시점(2023.12.27.) 적용 지수	105.1
시점수정치: 기준시점 지수 / 거래사례 지수	$104.7 / 105.1 \approx 0.99619$

※ 대상 물건의 기준시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미공시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거래사례 2 비교

요 인	세 항 목	비 고	격차율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동일 단지내 아파트로서, 제반 단지외부요인 대등합니다.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동일 단지내 아파트로서, 제반 단지내부요인 대등합니다.	1.00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층별 효용(대상 2층/사례 3층)등에서 대등합니다.	1.00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합니다.	1.00
격차율 계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단가 결정

산식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제요인 비교								
일련 번호	구 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1	2층 208호	1,782,442	1.000	0.99619	1.000	1,775,651	1,775,000	-

(나) 시산가액 결정

산식 = 면적 × 단가						
일련 번호	구 분	전유면적(㎡)	단가(원/㎡)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고
1	2층 208호	60.56	1,775,000	107,494,000	107,000,000	전체 지분

IV. 감정평가액 결정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선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련 번호	구 분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	2층 208호	60.56×1/2	53,500,000	김상용 지분 2분의 1 전부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32-7	1-432, 1-493 원호 아파트	아파트 및 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 통칭 : 원호주택	
							1층		386.94
							2층		386.94
							3층		394.12
				지하	117.78				
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1-432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1.4			
②	동 소	1-493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0.4			
1				(내) 철근콘크리트조 2층 208호		1	53,500,000	· 비준가격 · 공용면적 포함 : 65.95㎡ × 1/2 · 19평형 × 1/2 · 김상용지분 2분의1전부	
						2			30.28
					소유권	43,032			1
				①, ② × -----	731.8x-----x-	21.65			
				대지권	731,800	2			
	합 계						토지·건물 토 지 : 26,750,000 건 물 : 26,750,000 배분내역 ₩53,5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소재 "경동메르빌2차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 내 2층 208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 입니다.

(5) 설비내역

제반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호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원호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대상물건은 2인 공동소유 물건으로서, 지분별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매각지분 비율에 의거 금액을 사정하였습니다.
- 2) 대상물건의 현장조사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진행시 대상물건의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됩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1-432, 1-493 원효아파트 2층 208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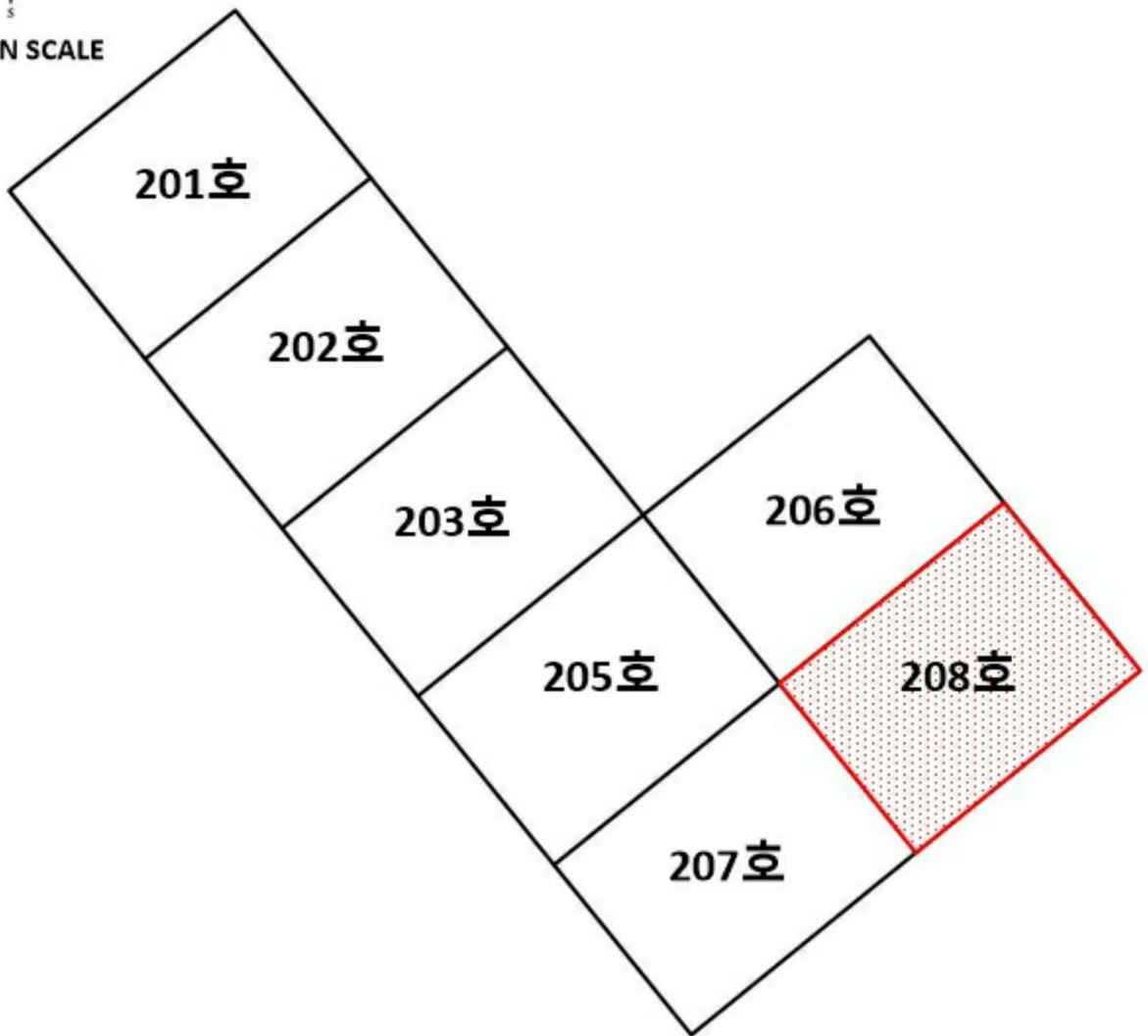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1-432, 1-493 원효아파트 2층 208호
-----	---



건물개황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1-432, 1-493
원호아파트(통칭:원호주택) 2층 208호



(:)



(:)



(:) 7,8



(:) 2 208